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기관 등의 국내생산 국기 우선구매 의무화〉
■ 윤종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645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종균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5. 9. 3.
3. 회 부 일 : 2025. 9.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인 태극기의 제작·계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태극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한 애국정신의 고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해외 생산 국기가 사용돼 상징성이 훼손되고 품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특히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태극기는 호국·보훈 행사 등에 사용됨으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함. 미국은 2024년 7월 법령을 제정해 연방기관이 사용하는 성조기를 미국 내 제조를 원칙으로 하고 원재료도 미국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더불어 미 국방부는 2014년 이후 성조기 조달을 전면 국산화해 운용해오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국내에서 생산한 국기를 우선구매하도록 하여 태극기에 대한 상징성과 존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 신설).

III.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 국내에서 생산한 국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국제협정 이행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두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국기의 구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생산한 국기를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한 국기를 구매하기 곤란하거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물품·용역 등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등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기업의 판로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고용 창출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국내생산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¹⁾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제품을 우선 구매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 창업 7년 이내 국내 창업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

기술개발제품·혁신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NEP·NET 인증제품 등 국내 기술력

한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기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²⁾ 국기 깃면의 도안·규격·표준색도 등 국기의 제작방법과 품질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 국기’의 우선구매에 대한 의무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한편, 최근 규격에 맞지 않는 저품질 수입산 태극기가 시중에 유통되고,³⁾ 2014년에는 조달청을 통해 저가의 중국산 태극기가 일부 군부대에 납품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하는 등,⁴⁾ 국내 제조업체의 경영악화와 국기의 존엄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이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태극기에 담긴 국가의 상징성과 존엄성을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엄격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제작된 태극기가 공적인 행사와 공간에서 사용되어 국기의 상징성과 품위가 유지되고, 국내 국기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신 상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국산목재 활용제품 우선구매: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우선 구매

「사회적기업 육성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여성기업 생산품: 사회적 배려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우선적 구매 실적목표 의무화

2)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계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태극기가 어찌다가…무궁화 깃봉 없는 중국산이 점령”, 동아일보, 2025.2.28.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228/131124482/1>

4) “군부대에 중국산 태극기 휘날리고…”, 동아일보, 2014.6.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40601/63919719/1>

다만, 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국내 생산”의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재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공산품의 ‘국내 생산’ 여부를 판단할 때, 주로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적용하고 있음.⁵⁾ 동 제도는 모든 원재료와 부자재, 가공 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제조의 핵심 공정이 국내에 설치된 설비와 인력으로 수행될 경우 국내 생산 제품으로 인정하는 방식임.⁶⁾

반면, 미국의 「All-American Flag Act」(2024년 제정)는 연방정부에 미국산 국기만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⁷⁾ 원단·실·염료 등 모든 원부자재와 직조, 염색, 봉제, 포장 등 전 생산공정이 모두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미국산’으로 인정하는 등, 우리나라의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비해 엄격한 국내생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임.

5) **직접생산확인제도**: 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제품의 핵심 제조공정이나 완제품 생산 능력을 국내에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생산설비 및 인력이 국내에 존재하는지를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검증함.

(근거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조달물자의 품질관리)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 인력 등의 점검

6)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9조(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①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 및 등록부서에 통보한다.

1. 제8조에 따른 확인자료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 타사 완제품 납품 또는 다른 업체가 생산한 완제품에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포장만 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는 경우

3. 수입완제품 또는 수입한 제품에 미세한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

4. 전 과정(제조 또는 가공, 조립 등 제조활동에 한함) 하청 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

7) 국내에서 적정 품질 또는 수량의 제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해외 주둔지·공관·선박 등 미국 외 지역에서의 사용을 위한 조달, 간소조달한도액(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미만의 소액 조달, 또는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함.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한 국기”라는 개정안 조문은 현행 국내 조달 실무에서 사용되는 ‘직접생산확인제도’의 범위와, ‘미국식 전 공정 국내 생산’ 기준 사이에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생산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거나,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여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국내 생산 국기 우선구매의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은 각 회원국이 공공조달시장에서 타 회원국의 상품·용역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와 ‘비차별’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조달협정(GPA) 하에서는 각 회원국이 조달기관, 품목, 일정 금액(양허기준)⁸⁾을 기준으로 GPA 적용 대상을 자체 설정할 수 있지만, 양허기준을 초과하는 조달계약에 대해서는 국내산 제품·서비스와 협정국 제품·서비스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차별 원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등 국내 조달제도의 운영 및 하위규정에 반영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정안에는 “국내에서 생산한 국기를 구매하기 곤란하거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을 두어, 정부조달협정(GPA) 등 국제무역협정과의 법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8) 대한민국의 GPA 양허기준: 중앙정부 2.3억원, 광역자치단체 3.5억원, 기타기관 7.1억원

제도의 정책적·실무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다만, 실제 조달계약 집행과정에서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로지원법」의 입법례⁹⁾를 참고하여 우선구매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부적인 적용 기준·절차는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행정안전부는 현행 「국가계약법」 및 「판로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원칙적으로 조달청을 통해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국기를 구매하고 있으며, GPA 양허기준 미만의 계약에 대해서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등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내 업체와의 우선구매 의무가 이미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개정안을 통해 “국산 국기 구입 의무화”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책적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8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구매 중대)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